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

### 행정패널 결정문

**MAN Nutzfahrzeuge AG 대 Daumtech Plant Service Co., Ltd.**

**사건번호: DBIZ2002-00108**

#### 1. 당사자

신청인: MAN Nutzfahrzeuge AG, Dachauer Str. 667, 80995 München, Germany.

신청인의 법정대리인: Ludwig v. Zumbusch, Law Offices of Seelig & Preu, Bohlig, Seestr. 13, 80802 München, Germany.

피신청인: Daumtech Plant Service Co., Ltd., 대한민국 서울시 강동구 길동 389-2, 동선빌딩 506호.

####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 (이하 "분쟁도메인이름"이라고 약칭함)은 <man.biz>이고, 분쟁도메인이름은 대한민국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68 대신빌딩 업무동 15층에 소재하는 (주)가비아 (이하 "등록기관"이라고 약칭함)에 등록되어있다.

#### 3. 행정절차개요

본건 신청은 뉴레벨사(NeuLevel, Inc.)가 채택하고 국제인터넷주소 관리위원회(ICANN)가 2001년 5월 11자로 승인한 .BIZ 도메인이름에 대한 초기상표권 보호정책규정 (Start-up Trademark Opposition Policy for .BIZ, 이하 "STOP규정"이라 약칭함) 및 초기상표권보호정책 절차규칙(이하 "STOP절차규칙"), 그리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BIZ 도메인이름에 대한 초기 상표권보호정책 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에 따라 제기되었다.

본건에 대한 신청인의 분쟁해결신청서는 영문본으로 작성되어 2002년 4월 26일에 전자우편양식으로, 그리고 2002년 5월 1일에 일반서면양식으로 WIPO 중재조정센터 (이하 "센터"라고 약칭함)에 제출되었으며 센터는 2002년 5월 2일 해당 서류의 수령을 통지하였다.

센터는 본건 분쟁해결신청서의 접수에 따라 2002년 5월 4일에 등록기관에 대해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위한 등록약관이 어떠한 언어로 작성되었는지를 질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등록기관은 2002년 5월 5일자 답변서를 통하여 그 등록약관상의 언어가 한국어임을 통지하였다.

센터는 등록기관의 사실확인에 따라 2002년 5월 10일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분쟁해결신청서는 그 작성 언어가 피신청인의 등록약관상 언어로 되어있지 않는 흠결이 있음을 통보하였으며, 신청인은 센터의 흠결보정 요구에 따라 분쟁해결신청서의 한국어본을 2002년 5월 29일에는 전자문서양식으로, 2002년 6월 10일에는 일반문서양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였다.

센터는 2002년 6월 12일 ‘STOP 분쟁해결신청서 및 행정절차개시 통지문’을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면서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이 2002년 7월 2일임을 통지하였다.

피신청인은 본건에 대한 답변서를 2002년 6월 27일에는 전자우편양식으로, 2002년 7월 9일에는 일반서면양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였으며, 센터는 2002년 7월 3일 해당서류의 수령을 통지하였다.

센터는 본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의 패널위원으로 황보영 변호사를 위촉하면서 황보영 변호사에게 패널위원으로서의 수락과 그 판단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인하는 서면을 발송하였고, 황보영 변호사의 수락과 독립성 및 공정성의 확인에 따라서, 센터는 2002년 7월 24일에 당사자들에게 행정패널의 구성과 결정예정일을 통지했다. 결정예정일은 STOP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 2002년 8월 7일로 통지되었다.

신청인은 2002년 7월 26일 피신청인의 답변에 대한 신청인측의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할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행정패널은 신청인 및 피신청인 모두에게 추가 주장 및 답변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청인은 2002년 8월 7일, 피신청인은 2002년 8월 8일 각자 추가 답변서 및 변론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추가답변기한의 허여에 따라 본건에 대한 행정패널의 결정예정일은 2002년 8월 23일로 변경되었다.

#### 4. 사실관계

신청인은 독일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로서 전세계적으로 트럭 및 버스, 디젤엔진 등의 생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다. 또한 신청인은 독일 및 한국을 포함하여 50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MAN” 명칭을 상표로 등록하여 이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분쟁도메인이름은 피신청인에 의하여 2002년 3월 27일 등록되어 현재 피신청인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다.

#### 5. 당사자들의 주장

##### A. 신청인의 주장

본건에 있어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상표 “MAN”과 동일하며,

-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 신청인의 상표 “MAN”의 세계적인 저명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에 의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은 신청인이 본 명칭을 자신의 도메인이름으로 등록시키는 것을 방해하여 고가로 신청인에게 도메인이름을 양도하려는 것이거나 신청인의 상표와 오인을 일으킴으로써 일반 수요자들을 자신의 사이트로 유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악의로 등록되었다.

## B.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피신청인의 답변 및 주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man”은 신청인의 상표가 아니라 일반 명사에 불과하다.
- 신청인의 상표인 “MAN”은 한국에서는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없다.
- 피신청인은 “구인·구직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

## 6. 논점 및 판단

STOP절차하에서의 신청은 특정한 단어에 대하여 지적재산권에 기한 청구자격(IP Claim)을 신청한 이의신청인(IP Claimant, 이하 “IP청구권자”)에 의하여서만 제기될 수 있다. 만약 그와 같은 특정 단어가 BIZ 도메인이름으로 등록될 경우, .BIZ gTLD의 운영자인 뉴레벨사는 IP청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20일 이내에 STOP 절차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IP청구권자가 복수 존재할 경우 뉴레벨사는 STOP규정 제4조 (1)(i)항에 따라 임의선택방식으로 우선권을 정한다. 오직 우선 IP청구권자만이 STOP 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서비스제공자가 우선 IP청구권자에 의하여 STOP 신청이 제기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선 IP청구권자에게는 일정한 티켓번호가 할당된다. 분쟁해결서비스제공자(본건의 경우, 센터)는 중재패널에게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복수의 신청이 있는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본건의 경우, 그와 같은 복수의 신청이 존재하지 않는다.

### 절차상 언어

본건 결정문은 STOP절차규칙 제11조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된다.

### 당사자의 입증책임

STOP규정 제4조 (a)항에 따라 신청인은 신청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 모두를 입증해야 한다:

-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상표 혹은 서비스표와 동일하다는 것,
-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 (iii) 분쟁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bad faith)으로 등록되거나 사용되고 있다는 것.

피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나 정당한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STOP규정 제4조 (c)항의 사례 (i)부터 (iii)까지를 적용할 수 있으며,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과 마찬가지로 본 STOP규정이 예시하는 부정한 목적에 대한 사례 역시 동 규정 제4조 (b)항을 통해 피신청인에 의하여 적용될 수 있다. 다만, STOP규정 및 STOP절차규칙에 따른 분쟁은 통상 도메인이름의 등록 직후에 이루어지는 만큼, 그 주된 논점은 등록시의 부정한 목적이 된다.

위 모든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본건에 대하여 판단한다.

### 신청인의 상표와 분쟁도메인이름과의 동일 여부

신청인은 현재 “MAN” 명칭에 대하여 독일 및 한국, 기타 다른 국가의 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MAN” 상표와 분쟁도메인이름이 동일함은 그 자체로 명백하다.

###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한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본건에 제출된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입증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 및 “man” 명칭에 대하여 특정한 법률상의 권리를 취득하였다거나 이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단지 피신청인 대표자의 이름의 일부가 영문으로 “Man”으로 기재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피신청인이 위 명칭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법률이 부여하는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본건에 제출된 주장 및 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현재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바, 따라서 본건에 있어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은 그 등록 자체가 부정한 목적을 위한 것이었는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살펴보면, “man”이란 일반인에게 있어 신청인의 상표로서보다는 피신청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일상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일반 명사로 인식되는 것이 보다 상식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일반 명사로 쉽게 인식될 수 있는 명칭을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한 사실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악의를 주장하기 위하여는 피신청인의 악의에 기한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음을 입증하거나 신청인의 등록상표가 이와 같은 일반 명사를 배제할 정도의 크히 현저한 저명성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이 입증한 한국에서의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 사실, 그리고 추가 답변서를 통하여 주장 및 제출된 일부 기사나 인터넷 검색결과만으로는 신청인의 상표 “MAN”이 피신청인이 소재하면서 영업을 주로 영위하는 국가이자 분쟁도메인이름이 등록된 한국에 있어 그와 같은 고도의 저명성을 취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신청인 상표 “MAN”의 저명성에 무단 편승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거나 기타 악의임을 추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나 근거도 현출된 바 없다.

오히려, 피신청인의 주장 및 제출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플랜트 시운전

전문용역업무 및 시운전 전문기술인력의 공급을 위한 영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인정되고 이와 관련하여 볼 때, 분쟁도메인이름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목적으로 주장하는 “구인·구직 사이트”간에는 합리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 및 제출자료만으로는, 본건 분쟁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bad faith)으로 등록되었다거나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 7. 결정

이상 위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STOP규정 제4조 (a)항에 열거된 세가지 사항 전부를 입증하는데 실패하였다고 판단하며 따라서 신청인의 본건 신청을 기각한다.

---

황보영  
패널위원

□□: 2002□ 8□ 23□